

(우)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5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3230호

시행일자 2023. 2. 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호(2023. 1. 3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에 안내해드립니다.

- 다 음 -

※ 주요내용 :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조항, 명칭 및 상병코드 등 현행화, 시행규칙 설명 순서에 따라 처방전 서식 순서 변경, 환자 등록신청서의 동일한 처리절차의 일원화 등 일부개정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.

#붙임 1.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안 1부.

2.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26개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